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현찬 의원 (찬성자 9명)

나. 의안번호 : 제 1434 호

다. 발의일자 : 2016. 10. 31

라. 회부일자 : 2016. 11. 03

2. 제안이유

현행 조례 중 특별회계 세출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인용조문의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인용조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함.(안 제1조 및 제2조제2호)

나. 특별회계 세출조항을 관련 상위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제5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 (1) 친구조문대비표 : 원안참조
-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원안참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세입 및 세출 조항을 상위법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인용조문의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안 제4조의 세입항목 중 “국가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항목은 법 제17조1)에서는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4.1.29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3.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4. 차입금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2조 각 호(같은 조 제1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에 드는 비용
 -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 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반의 운영 지원
 -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 주민지원사업
 -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일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된 점을 고려하여 상위법에 명시한 대로 일치시키는 한편,

- 안 제5조의 세출항목 역시, 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세출항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구의 표현과 구성을 달리하고 있어 특별회계 운영 상 혼란이 예상됨으로 이를 상위법과 일치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표 1] 조례 제5조(세출)의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연구용역 등에 드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3.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p>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2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p>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사업들

1.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2. 수변녹지 조성사업
3. 매수한 토지등의 관리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5. 환경기초조사사업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
8.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9. 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와 운영
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1. 비점오염저감사업(非點汚染低減事業)
12.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4. 조류(藻類) 주의보 기간 중 조류 제거에 드는 정수(淨水) 비용의 지원(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수도사업자 중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15.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 또는 상류·하류 지역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